

2023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

< 주요 추진일정 >

○ 행복학습센터 지정·운영 지원 사업(신규)

- 신청기간 : 2023. 1. 16.(월) ~ 20.(금)
- 사업량 : 2개 읍면동

○ 교부신청

- 신청기간 : 2023. 1. 16.(월) ~ 30.(월)까지
- 대상사업 : 7개 사업
- 협조사항 : 사업별 교부 신청서 작성 후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



경 상 북 도
[교육협력과]

2023 경상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

- ❖ 언제 어디서나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제 구축
- ❖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

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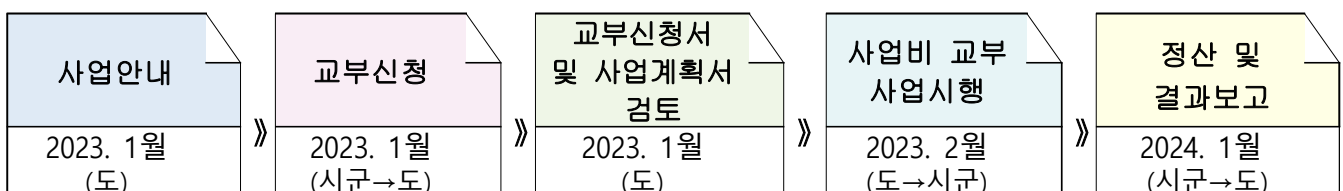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- 사업내용 : 7개 사업
- 사업대상 : 23개 시군(평생교육 담당부서)
- 사업규모 : 1,399백만원(도비 416, 시군비 983)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사업명	사업량	총사업비	도비	시군비
	계	96	1,399	416	983
1	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	8	106	30	76
2	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지원	12	101	30	71
3	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	12	173	52	121
4	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	19	370	111	259
5	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	23	460	138	322
6	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 지원	7	84	25	59
7	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	15	105	30	75

2 사업계획

- 추진절차 및 일정



- 행복학습센터 신규(2개소) 지정·운영 신청 : 2023. 1. 16.(월) ~ 20.(금)
- 교부신청 : 2023. 1. 16.(월) ~ 30.(월)

- 시군에서는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 - 지역 평생교육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운영 및 지원
 - 위탁기관 선정 시 선정·집행·평가과정 전반의 투성명·공정성 제고
- 사업운영 전 동일 유사사업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익법인, 道진흥원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
- 사업계획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
 -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
(예) 단가(시간당) × 인원 × 개월 수 × 월당 수업 수 × 회당 수업시간 = 금액
 - 산출내역 작성 시 도비는 강사료, 재료비 등 필수경비로 우선 편성
- 업무추진비,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불가
- 사업변경 발생 시 구체적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승인 요청 (시·군 → 도 교육협력과)
 - 예산항목 간 변경, 사업 성격 및 내용 변경, 위탁기관 변경 등
 - ※ 사업 완료 시점에서의 예산 변경 불가,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계획으로 지출 가능
 - 유사 비목 간 예산변경, 동일 비목 내 소액 예산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내부결재를 받은 후 道 승인 없이 지출 가능(단,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결재 서류 첨부)
- 시군에서는 각 사업에 대해 수시 자체점검 실시(최소 연 1회 이상)
 - 시군이 요청하거나 필요시 도-시군 합동 점검 가능
- 사업을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철저
- 이외 기타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용

2

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지원

- ❖ 도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 대비 및 배움과 교육 나눔 문화 확산
- ❖ 넓은 지리적 여건 극복을 위한 소규모 강좌 지원으로 교육 접근성 개선

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- 사업대상 : 12개 시군
 - 경주, 김천, 구미, 영천, 상주, 문경, 경산, 의성, 청도, 고령, 예천, 울진
- 추진방법 : 시군 직영
- 지원금액 : 시군당 2.5백만원 도비 지원
- 사업내용
 - 교육생 5명 이상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강좌를 시군 자체 심사 후 지원
 - 일정 자격을 갖춘 재능기부자, 지역강사, 평생교육지도자 등 지역인적 자원 적극 활용(전문강사도 지원 가능)
 - 생활스포츠교육, 문화예술교육, 건강심리교육, 취미교양교육 등
- 사 업 비 : 101백만원(도비 30, 시군비 71)

2 사업운영기준

- (예산운영)
 - 예산의 95% 이상을 강사료로 편성
 - 강사료 이외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- (교육운영)
 - 강사료는 시간당 최대 4만원, 회당 최대 2시간까지 지원 가능
 - 교육시간 제한 없고(1회 특강 가능), 총 강의료는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
 -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또는 수강생 자부담으로 운영